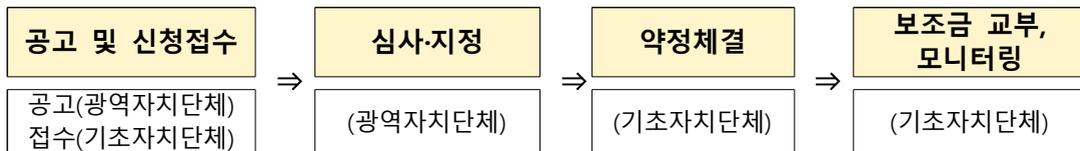


## 2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 2-1 예비마을기업

- (신청 자격)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규모) 1천만원 이상(자부담 20% 이상) ※ 자치단체별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지정 시기) '23. 10월 ~ '24. 1월 예정(마을기업 모집공고와 동시에 진행)
- (지정 기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지정 추진
- (지정 기간)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 (지정 절차)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편성·집행기준(p38)에 부합한지 확인
- 광역자치단체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후 즉시 지정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예비마을기업 지정현황을 관리(자체 예산으로 선정한 예비마을기업 포함)
-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지원

<질의> 예비마을기업에도 지자체 우선구매 등과 같은 마을기업 지정 시 부여되는 행·재정적 혜택이 있는지?

⇒ <답변> 없음,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 후에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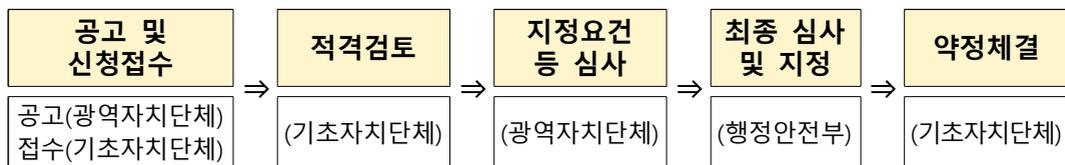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2021.10.19.)]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2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마을기업(1~3회차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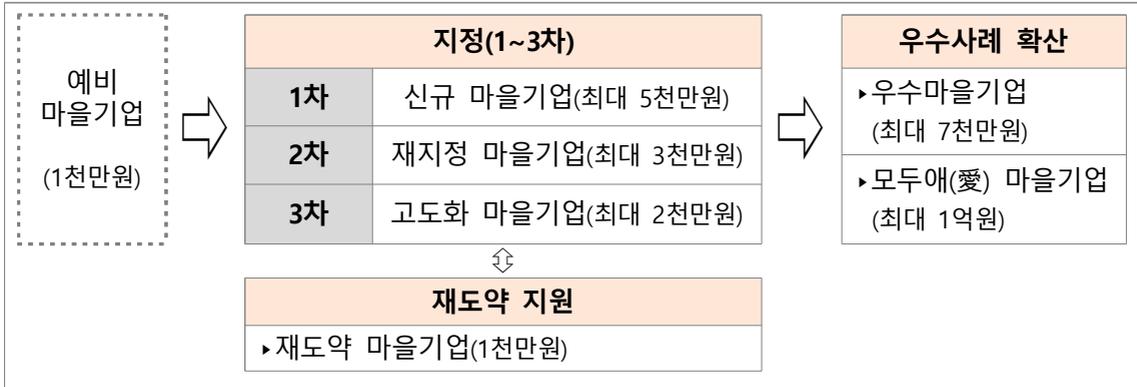
- (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 (심사 시기) '23. 10월 ~ '24. 2월 예정(모집공고 등 구체적 일정은 별도 통보)
- (지정 절차)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거나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 우선 선정 가능

## 《마을기업 지원》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맞춤형 육성 지원(행안부)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명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자립 지원(행안부, 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연도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2-3 맞춤형 육성

#### 《재도약 지원사업》

- (목적) 운영실적이 저조(연 매출 5천만원 미만)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 (추진 방식) 자치단체 추천, 기초 컨설팅 등을 거쳐 재도약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 진행



- (연계 지원) 재도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마중물 사업비\* 지원, 컨설팅 후 재지정 마을기업 선정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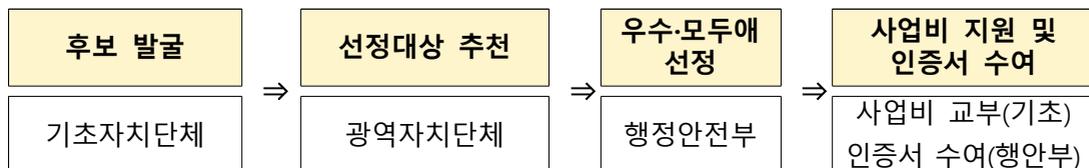
\* 1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20% 별도)

#### 《우수사례 확산(인센티브 사업)》

- ※ 인센티브 사업(우수 및 모두애(愛))을 신청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추천해야 함
- ※ 구체적인 심사 일정, 선정 분야, 심사기준, 지원혜택 등은 별도 통보
- ※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기업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우수나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

- (추진절차)



- (선정 방법)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 □ 우수마을기업

- (목적)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마을기업으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발굴·확산
  - (대상)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 중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나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 (지원 혜택)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우수마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 최대 7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사업비 편성기준(p40) 준수

## □ 모두애(愛) 마을기업

- (목적)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 (대상)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이고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나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 (지원 혜택) 제품 개발·기반 설비 확충·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간판 마을기업'으로 성장토록 제품 개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 최대 1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10% 기준, 사업비 편성기준(p40) 준수

## 2-4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중복되는 인건비 편성과 집행이 없는 경우 동시 수행 가능

**[참고 1] 마을기업 지정 상세절차**

**① 공고 및 신청 접수**

- 마을기업 모집 공고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동 시행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토대로 공고문을 게재
- 신청 접수 : 기초자치단체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p55~p87) ② 회원 명단(p88),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회차별)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광역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② 적격검토(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적격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검토

- 적격검토 후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에 추천\*
  - \* 적격검토 보고서(p99~p107), 마을기업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첨부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외 대상 단체 등 적격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 추천 불가
  - 부적격 기업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 ③ 지정 요건 등 심사(광역자치단체)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p22~p25)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하고 우선순위 부여(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
  - \* (구성) 7인 이상의 민관위원(민간 위원 50% 이상 참여) / 위원장은 호선
  - 적격검토 보고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검토하되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대면회의)
- 심사 후 추천대상은 추천명단(우선순위 기재)과 요약보고서(p108~p116)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 작성한 요약보고서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격검토 보고서 첨부, 신청 서류(기본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는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행정안전부에 추천 불가
  - 탈락 기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 ④ 최종 심사 및 지정(행정안전부)

- 광역자치단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및 기존 정보화마을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탈락한 기업은 탈락 사유 명시)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약정을 체결

[참고 2] 마을기업(1~3차) 지정 심사 기준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li> <li>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li> <li>입문교육 이수</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li> <li>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li> <li>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li> <li>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li> </ul>
공공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li> <li>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li> <li>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li> <li>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li> </ul>
지역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li> <li>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li> <li>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li> <li>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li> </ul>
기업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li> <li>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li> <li>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li> <li>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li> <li>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li> </ul>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li>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li> </ul>
가점	최대 5	3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li> <li>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li> </ul>
		2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li> <li>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li> </ul>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안부	정보화마을
21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li> <li>■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li> <li>■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li> <li>■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li> <li>■ 전문교육 이수</li> </ul>
공공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li> <li>■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li> <li>■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li> <li>■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li> </ul>
지역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li> <li>■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li> <li>■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li> <li>■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li> </ul>
기업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li> <li>■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li> <li>■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li> <li>■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li> <li>■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li> </ul>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li> <li>■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li>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li>■ 단가 산출의 적정성</li> </ul>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li> <li>■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li> </ul>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li> <li>■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li> </ul>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li> <li>■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li> <li>■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li> <li>■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li> </ul>
공공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li> <li>■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li> <li>■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li> <li>■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li> </ul>
지역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li> <li>■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li> <li>■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li> <li>■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li> </ul>
기업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li> <li>■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li> <li>■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li> <li>■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li> <li>■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li> </ul>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li> <li>■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li>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li>■ 단가 산출의 적정성</li> </ul>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li> <li>■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li> </ul>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li> <li>■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li> <li>■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li> </ul>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